

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9.12(화) 조간 이후	배포	
책임자	금융위 현장지원팀장 윤상기 (02-2100-2520)	담당자	이정찬 사무관 (02-2100-2521)	
	금감원 금융혁신국장 이준호 (02-3145-8201)		김홍건 팀장 (02-3145-8870)	

제 목 : 현장점검반 '17.5~8월(97~110주차) 주요 수용사례

■ '17.5.1~'17.8.31 기간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건의과제 208건중 65건을 수용

- ▶ **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 간소화**
- ▶ **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출시 확대**
- ▶ **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간소화**
- ▶ **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수탁고 산정시 관리형신탁 제외**
- ▶ **클라우드넷內 「편당정보 아카이브」 신설하여 투자정보 종합 게재**

1.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

- '15.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'17.8월말까지 1,896개 금융회사,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총 6,58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
 - 이 가운데 금융회사,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·제도개선 요구(총 4,465건)에 대해 총 2,157건을 수용(수용률 48.3%)

□ '17.5.1~'17.8.31 기간중 188개 금융회사,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49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388건의 건의를 청취

< 최근('17.5.1~'17.8.31) 접수현황 >

건의사항 분류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합계(비중)
① 관행·제도개선	81	59	52	88	280(72%)
② 법령해석, 비조치	2	-	-	6	8(2%)
③ 현장조치	8	54	9	29	100(26%)
합계	91	113	61	123	388(100%)

□ 동 기간 중 금융회사,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·제도개선 과제(총 208건) 에서는 65건을 수용·회신(수용률 약 31%)

< 최근('17.5.1~'17.8.31) 회신현황 >

검토결과 분류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합계(비중)
① 수용	26	18	11	10	65(31%)
② 불수용	34	30	24	36	124(60%)
③ 추가 검토	11	1	3	4	19(9%)
합계	71	49	38	50	208(100%)

< 현장점검 누계 실적 ('15.4.1 ~ '17.8.31) >



2. 주요 개선 내용

① 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 간소화

☎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(02-2100-2971)

- (건의배경) OTP 분실에 따른 사고등록 후, 사고등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OTP 등록된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필요
 - 다수 금융회사에 OTP가 등록된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하여 사고등록 해지
- (개선) OTP 등록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실명 확인하면 나머지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 해지 가능
 - ※ 은행, 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 56개 참여하여 41개사 이용 가능하며,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완료 예정

②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출시 확대

☎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조남훈 사무관 (02-2100-2631)

- (건의배경)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구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불편함* 발생
 - * 별도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실정
 - 일부 신용카드업 경영은행* 및 카드사에서 점자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소수에 그쳐 카드 선택에 제한
 - * 농협은행, SC은행, 경남은행 등
- (개선) 모든 전업 카드사*가 '17년 내에 대표상품 2~3개를 점자 신용카드로 발급할 예정
 - * 비씨, 신한, 하나, KB국민, 우리, 롯데, 삼성, 현대카드

③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간소화

☎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(02-3145-7556)

- (건의배경) 카드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며 연장 사실을 가맹점에 안내
 - 동일 가맹점에 다수의 카드사가 SMS, 우편 등을 발송하는 비용 발생*
 - * 1개 카드사 연평균 SMS 약 95만건, 우편 약 30만건 ⇒ 연간 약 1억원
- (개선) 자동연장 안내 폐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여신금융협회 일괄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카드사 고지 간소화(세부방안 업계협의를中)

④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수탁고 산정시 관리형신탁 제외

☎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(02-2100-2833)

- (건의배경) 신탁재산을 포함한 자산운용 수탁고가 20조원 이상인 경우 자산총액이 5조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도 지배구조법 전면 적용*
 - * 3인 이상 사외이사 선임,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 필요
 - 자산운용 수탁고 산정시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한 관리형신탁*도 포함되어 소규모 부동산신탁사 등에 지배구조법이 전면 적용
 - * 관리형신탁 :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거나,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·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(자본시장법 §3①-ii)
- (개선) 지배구조법 적용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 수탁고(20조원) 산정시 관리형신탁은 제외(지배구조법 시행령 §6③-ii 개정)

⑤ 클라우드넷內 「펀딩정보 아카이브」 신설하여 투자정보 종합 게재

(‘16.11.7,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)

☎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(02-2100-2672)

□ (건의배경) 클라우드펀딩 발행기업 결산보고서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

○ 다수의 클라우드펀딩 투자시 결산보고서가 여러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확인이 불편

□ (개선) 클라우드넷(클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www.crowdnet.or.kr)內 “펀딩정보 아카이브” 신설하여 투자정보*를 종합 게재

* 펀딩 진행·결과정보, 발행기업 결산보고서, 등록취소·해산된 중개업자가 모집한 기업정보 등

※ ‘17.5.1~8.31 관행·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 (<http://better.fsc.go.kr>)內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활용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